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70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701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체,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 법률상의 배상책임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약관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0년	전기납	18세 ~70세	월납 연납
특별약관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일반상해골절진단				
	일반상해골절수술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교통상해입원일당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 월지급형)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 월지급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운전중사고벌금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부상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보이스피싱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					
제도성 특별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	-	-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지정대리청구서비스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갱신평약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17.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대상담보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자동차사고부상

- (1) 회사는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함.
 - 가.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나.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다.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라.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립.
- (3)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 (4)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가.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하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18. 기타

- (1)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 또는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2) 직업, 직무상 영업용 운전자는 해당 상품을 가입하지 못함
- (3) 판매채널 :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제외)